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83 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황운하·조 국·김준형

이해민 · 김재원 · 강경숙

김선민 · 신장식 · 정춘생

서왕진 • 박은정 • 차규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대면회의로하되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 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 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,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

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4항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전단 중 "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2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생 제22조(회의 등) ① ~ ③ (현행 략) 과 같음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성폭」 ④ -----다음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경우에는----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 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 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(전 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<신 설>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<신 설>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

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⑤ ~ ⑦ (생 략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